

2025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예비선도기업) 지원계획 2차공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표) 우수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속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산업 리딩기업 육성
- (지원규모) **총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제외)
- (신청자격)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분야 : ①농생명바이오산업②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산업③탄소융복합소재

○ (세부 지원대상)

세부내용	
■ 소재	-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등) 소재 기업
■ 업종	- 전북특별자치도 주축산업 및 전·후방 연계 산업 영위 중소기업 ※ 지역특화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해당 기업(상세 코드는 붙임 참조)
■ 고용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매출	- 3년('22-'24) 평균 매출액 50억 이상, 400억 미만 기업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TP → 지원기업)
- (지원기간) 협약일 ~ '25. 11. 28.(금)

□ 상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단위 : 백만원, 개사)

프로그램명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목표
R&D과제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주를 위한 R&D과제 기획 지원 · 과제기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수당, 컨설팅 비용, 기획보고서 작성 원고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 회의비 등 기획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불가 · 과제기획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과제기획보고서, 회의록 등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수당 및 원고료는 전복TP 산정기준을 준용함 - 자문수당 : 20만원/회(대면기준) - 원고료 : 13,000원/3.5매(200자 원고지 3.5매를A4 용지 1면으로 산정) 	10백만원 이내	5개사 이내
시험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분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인 전문 시험분석 기관·연구소·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 - 시험비 외 시료(재료)비 불인정 - 지원한도 내 다수의 건 신청 가능 ※ 2025년 1월 이후 수행한 시험분석 건 소급 지원 가능 	20백만원 이내	
인증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술 및 제품 인증취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인인증 기관을 통한 인증취득을 위한 각종 부대비용 지원 - 지원한도 내 다수의 건 신청 가능 - 지원기간 내 인증취득 완료 건에 한해 지원금 지급 ※ 2025년 1월 이후 인증서 발행 건 소급지원 가능 · 해당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ISO14001, ISO45001,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증 취득 비용 지원(건당 최대 300만원) - 최상위 인증(NEP, NET, 혁신제품, 우수조달) 취득을 위한 인증기관 컨설팅비 등 지원 	10백만원 이내	
시제품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 이전의 테스트 샘플 제작비용, 시금형 제작비용 등 - 제품제작을 위한 기계설비, 장비구매 비용 등은 제외 	25백만원 이내	
제품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제품의 기능추가 및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고도화 등 	25백만원 이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카탈로그, 리플릿 등) - 기업·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부스비, 장치비, 통역비 등) 	20백만원 이내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디자인 : 신규/기존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시각디자인 : 포장 디자인, 지기구조, 라벨 등 · 브랜드 디자인 : 기업 BI 및 CI 제작지원 	20백만원 이내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지원분야(한도) : 특허(최대 400만원), 실용신안(최대 150만원), 상표/디자인(최대 50만원) - 지원한도 내 다수의 건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는 회사명의 출원건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기간 내 완료된 출원건에 한해 지원금 지급 ※ 2025년 1월 이후 출원 건 소급 지원 가능 	6백만원 이내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애로분야 해결을 위한 관련 전문가 매칭 및 자문 지원 - 기술사업화 전략, 구조개선, 영업·마케팅전략,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등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5백만원 이내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감소 등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불량감소 등에 대한 시험분석 자료 필수 	30백만원 이내	
판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판로확대 지원 - 방송사 및 홍보사 연계를 통한 제품 홍보 콘텐츠 송출 	15백만원 이내	

※ 최대 지원가능금액은 세부 프로그램별 내용 확인 必, 지원단가는 지원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붙임파일	한글파일로 제출(**.hwp) * 직인 페이지는 한글파일에 삽입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양식참고
3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양식참고
4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공고일 이후 발급
5	최근 3개년도(22~24) 재무제표	-
6	24년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2월 1일 ~ 12월 31일 기준)	-
7	세부 견적서 1부 및 비교 견적서 1부 * 세부 견적서 산출내역 없을 경우 탈락 처리	사업비 산출내역과 일치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9	기타 가점 및 기업 역량 관련 서류	해당시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공급기관(업) 포함)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요건검토) → 선정평가(서면 혹은 대면평가) → 결과통보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지원내용 타당성 (35)	○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25
	○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5)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15
	○ 고용·매출 증대 가능성 및 지역 내 파급효과	10
우대가점(3)	○ 우대가점 해당사항 확인	최대 3점

※ 평가 항목은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음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제출 (유효기간에 한함)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제출 (유효기간에 한함)	2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제출 (유효기간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TP 확인	2
6	'25년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초 지자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김제시, 남원시, 장수군	TP 확인	1
7	지역 내 공급기관(업)과 컨소시엄 구성한 기업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사업자등록증	1

3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역주력산업육성(지역특화 프로젝트) '25년 지원대상 지원불가
- 세부사업별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금의 최소 10% 이상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사업비 산출 시 주의사항※

- 프로그램별 지원금의 10%이상 자부담(현금부담 원칙)
-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기업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프로그램명	지원금	기업 자부담금 (지원금의 10%이상)	총사업비	비고
시제품 제작	20,000천원	2,000천원	22,000천원	VAT 3,300천원은 기업부담
마케팅	10,000천원	1,000천원	11,000천원	
합계			33,000천원	

※ 프로그램별 지원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업은 총사업비 및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33,000천원+3,300천원=36,300천원)에 대해서 지출증빙 해야함

- 기업부담금은 현금부담이 원칙이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기업지원금 지급은 최종결과물 평가 후 지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엔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전자접수시스템 외 제출 불가(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지원사업 중 홍보물 제작 관련 지원(마케팅,디자인) 결과물에 아래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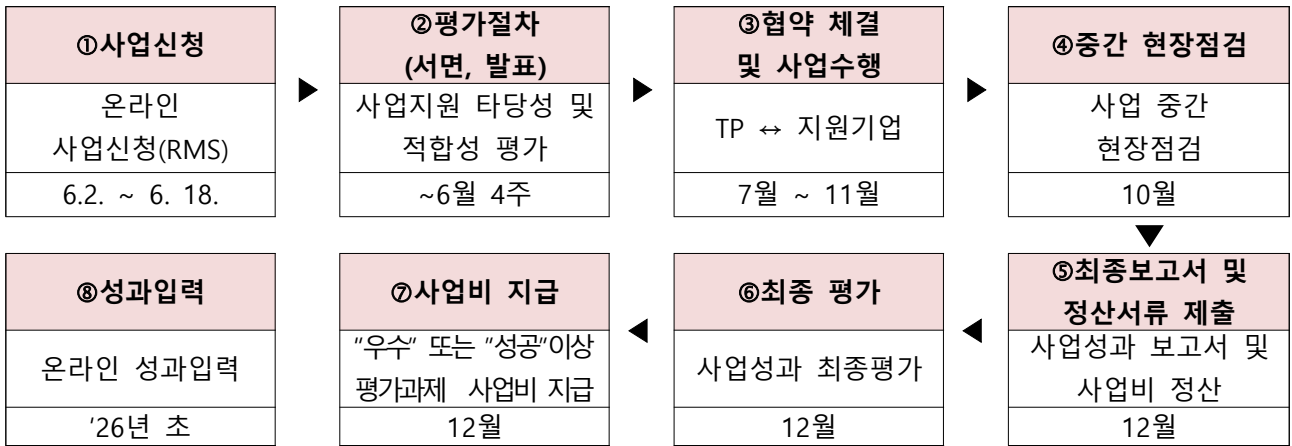
본 홍보물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2025년 전북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일자 : 2025. 00. 00.

- (신청자격 요건)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2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4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6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7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한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4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등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년 6월 2일(월) ~ 2025년 6월 18일(수) 18:00
- (신청접수) 2025년 6월 2일(월) ~ 2025년 6월 18일(수)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접수처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 시스템 주소 : <http://www.smttech.go.kr/region/rms>
 - ※ 회원가입 완료 후 과제신청 가능
 - ※ 마감일 접속증가 장애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
- (제출서류) 프로그램별 첨부서식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6 관련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사업명	소속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단	임소빈	063-219-2129	ss28@jbtp.or.kr

○ RMS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